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5 발의연월일: 2020. 6. 19.

발 의 자:소병훈·김회재·인재근

안규백 · 양정숙 · 김승남

권인숙・박 정・윤재갑

윤준병·김경만·전재수

임종성 · 이워택 · 강득구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 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기업의 기부금, 휴면예금 등의 민 간재원과 정부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 증계정을 조성하여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동 자금은 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출연 이나 정부재원 등 자금의 주요 수입원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의 금융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휴면예금의 관리와 서민금융사업을 같은 계정을 통해 수행함으로써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보호에 소홀하는

등 이해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합한 서민금융안정기금을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 설치하고, 기금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서의 전입금 및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활지원계정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진흥원의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7호의2 및 제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 나.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시 장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함(안 제39조 및 안 제39조의2 신설).
- 다.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9조의3 및 제39조의4 신설).
- 라.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은 휴면예금등과 휴면예금등 이관금의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휴면예금등의 지급,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 비 등의 용도로 사용함(안 제39조의5 신설).

- 마. 진흥원으로 하여금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휴면예금 등 조회·지급 시스템 구축 운영,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바. 시장보완계정은 종전의 보증계정의 재원과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은행·보험회사·상호금융조합등·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도록 함(안 제47조).
- 사. 시장보완계정을 통한 보증료율은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및 시장보완계정의 수지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짐을 명시하고, 보 증료 상한 규정을 삭제하며, 보증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보증료 에 대한 연체보증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2조).
- 아. 자활지원계정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복권기금에서 배분된 복권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함(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59호) 및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증하는"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33조"를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7의2. 제39조에 따른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9조의4에 따른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작성

제31조제1항 중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를 "매"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 중 "관리하는 계정별로"를 "진흥원의 회계와 서민금융안정기금의"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휴면예금등의 관리"를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하고, 제39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관 기금의 설치

제39조의 제목 중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를 "서민금융안정기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를 "휴면예금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신용보증 및 서민 금 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 정"이라 한다)"을 "서민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 다.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계정의 구분 및 계정 간 거래) 기금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시장보완계정 및 자활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한다.

제3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한다.

- ② 진흥원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9조의4(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 도에 따른다.
 -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의 각 계정별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은 기금의 각 계정별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 ⑥ 진흥원은 기금의 각 계정별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제39조의4 다음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2장제7절제2관에 제3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9조의5(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0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 2. 휴면예금등 출연금의 운용수익금
 - ②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45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
 - 2.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 3. 휴면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4. 제45조의2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 5.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연구
- 6. 그 밖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위원회는"을 "진흥원은"으로, "휴면예금등을"을 "휴면예금등에"로, "해당"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접수, 휴면예금등의 지급 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7절제2관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진흥원은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 2. 휴면예금등 조회·지급 시스템 구축·운영
- 3.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6조 앞의 "제8절 신용보증"을 삭제하고, 제46조 앞에 관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관 시장보완계정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보증계정의 조성)"을 "(시장보완계정의 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의 재원"으로,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한다.

- 5. 시장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 6의2. 제4항에 따라 시장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 달한 자금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를 "개인에 대한"으로, "진흥원"을 "시장보완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 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3. 상호금융조합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신용협동 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을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시장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시장보완계정의 보증효력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 업종별로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보완계정의 부담

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 증권으로 본다.

제48조의 제목 "(보증계정의 용도)"를 "(시장보완계정의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차입금에 대한"을 "차입금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증계정"을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시장보완계정"으로, "연구"를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을 "신용보증을 통한 서민필요자금의 원활한 공급"으로 한다.

2의2. 제47조제4항에 따라 시장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제49조제1항 중 "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본재산과 제39조의4제5항에 따른 시장보완계정의 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증계정"을 "시장보완계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을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시장보완계정의 수지 현황"으로,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를 "보증한 채무 중 이

행되지"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금액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제7절에 제4관(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제4관 자활지원계정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재원)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출연금
- 2. 기부금
- 3. 이자 및 대출 회수금
-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5.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 6. 제39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금

-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 2.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 3.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자금대출 및 운영경비·사업비 보조 등 지원
 - 4.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5.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7.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3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를 각각 "진흥원"으로, "제43조"를 "제45조"로, "제45조"를 "제45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 및 제46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은 각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시장보완계 정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 및 제46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각각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시장보완계정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 및 제46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신용보증계정을 통해 수행하는 사업 중 제40조제2항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과 시장보완계정의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자산과 부채그 밖의 권리·의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른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	7
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	
융진흥원이 <u>보증하는</u> 것을	제39조의2제1항
말한다.	에 따른 시장보완계정의 부담
	<u>으로 보증하는</u>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	제7조(정관) ①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 <신 설></u>	7의2. 제39조에 따른 서민금융
	안정기금에 관한 사항
8. <u>제33조</u> 에 따른 채권의 발행	8. <u>제47조제4항</u>
에 관한 사항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생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저 ① 진흥원은 <u>관리하는 계정별</u>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 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33조(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sim	4.	(현	행 ī	가 :	같음	음)			
49	리2.	제.	393	스의	4에	u	구른	入	민	금
	융인	<u></u> と정	기言	급의		フ]	금은	<u> </u>	-계	획
	<u>안,</u>	결	산소] · []	바차	대	조포	į į	및	<u>손</u>
	<u>익</u> 겨	¶신	서	의 ?	작성	}				
5.	(현	행.	과 :	같은	<u>)</u>					
₩31	조(o)	임금	과	손	실	금으]	처i	리)
1				<u>_</u>	<u>H</u>					

② (현행과 같음)<삭 제>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진흥원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절 <u>휴면예금등의 관리</u> <신 설>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 제39조(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 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 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신 설>

<신 설>

--진흥원의 회계와 서민금융안 정기금의-----

제7절 서민금융안정기금 제1관 기금의 설치

휴면예금등의 효율적인 관리·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 | 운용과 신용보증 및 서민 금융 생활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민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 제39조의2(계정의 구분 및 계정 간 거래) 기금은 휴면예금등관 리계정, 시장보완계정 및 자활 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관리한다.

- 제39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운용한 다.
 - ② 진흥원은 기금에 여유자금 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금융회사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 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신 설>

채권의 매입

-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 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39조의4(기금의 회계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일 전까지 기금의 각 계정별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 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 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u><신 설></u> <신 설>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진흥원은 기금의 각 계정별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 에는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 야 한다.
- ⑥ 진흥원은 기금의 각 계정별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 에는 제5항에 따라 적립한 금 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 족할 때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부족액을 보 전한다.

제2관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제39조의5(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휴면예금등관 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 다)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 1. 제40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 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 예금등
- 2. 휴면예금등 출연금의 운용수 익금
- ②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제45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② (생 략) <신 설>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

 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 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 2.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익금

금등의 지급

- 2.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 3. 휴면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 리를 위한 경비
- 4. 제45조의2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 5.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 동을 위한 조사·연구
- 6. 그 밖에 휴면예금등 원권리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휴면예 금등 원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금융회사등은 법인명, 법인등록 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u><삭 제></u>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휴면계 <삭 제> 정의 운영 재원 중 제41조제1 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은 다른 운영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 리하되, 제2조제2호나목은 다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 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 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제45조(휴면예금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 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 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다.

<신 설>

<삭 제>

세45소(유면예금등의 지급정구	_
등) ① <u>진흥원은</u>	_
	_
	_
<u>휴</u> 면예금등에	_
관리위원회의	1
심의를 거쳐 해당	_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1
접수, 휴면예금등의 지급 절치	<u>}</u>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디	H

<신 설>

제8절 신용보증 <신 설>

제46조(신용보증계정의 설치) 신 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진흥원 에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 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시장보완계정의 재원-----그 재원으로 한다.

- 1. ~ 4. (생 략)
- 5.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 6. (생략)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 진흥원은 휴면예금 등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 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1.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안내
- 2. 휴면예금등 조회·지급 시스 템 구축・운영
- 3. 휴면예금등에 관한 홍보
- 4. 그 밖에 휴면예금등의 지급 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 항

<삭 제> 제3관 시장보완계정 <u><</u>삭 제>

제47조(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 제47조(시장보완계정의 재원) ① --호와 같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시장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 6. (현행과 같음)

<신 설>

- 7. 그 밖에 <u>보증계정</u>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u>진</u> 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조합

<신 설>

6의2. 제4항에 따라 시장보완계
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
권으로 조달한 자금
7 <u>시장보완계정</u>
②
<u>개인에 대한</u>
<u>시장보완계정</u>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
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

-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 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 3. 상호금융조합등: 「농업협동 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

- 3. (생 략)
- 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 卫
-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 신용협동조합
-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 설>

산업협동조합법 | 에 따른 조 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 합법」에 따른 조합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 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삭 제>
-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시장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 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 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시장보 완계정의 보증 효력이 지속되 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 액을 시장보완계정에 출연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융회사 업종별로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 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ㅣ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 제48조(시장보완계정의 용도) 시 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 용한다.

- 1. (생략)
-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u><</u>신 설>

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 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보 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 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 채증권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 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 과 제4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필요하-----

장보완<u>계정</u>-----

- ----.
- 1. (현행과 같음)
- 2. 차입금의-----
- 2의2. 제47조제4항에 따라 시장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u>보증계정</u> 의	조성	·운용	및	관
	리를 위한 기	경비			

- 4. <u>보증계정</u>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 5. 그 밖에 <u>보증계정의 설치 목</u> <u>적 달성</u>에 필요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 항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다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이 <u>보증계정</u>의 부담 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 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 다.

제52조(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3. <u>시장보완계정</u>
4. 신용보증 상품 개발 및 시장
<u>보완계정</u>
<u>조사·연구</u>
5 <u>신용보증을 통한 서</u>
민 필요자금의 원활한 공급
제49조(보증의 한도) ①
-시장보완계정
<u>기8또단계8</u> 제47
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기
본재산과 제39조의4제5항에 따
른 시장보완계정의 적립금
 ②시장보완계정
 ② <u>시장보완계정</u>
 ② <u>시장보완계정</u>
 ② <u>시장보완계정</u>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있다.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수있다.

<u><신 설></u>

<u><신 설></u> <신 설>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시장보완계정의 수지 현황
대통령령
②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u>금액에 대하여</u>
,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 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u>제4관 자활지원계정</u> 제55조의2(자활지원계정의 재원)

<u>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u> <u> 각 호와 같다.</u>

- 1. 정부출연금
- 2. 기부금
- 3. 이자 및 대출 회수금
-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 5.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 6. 제39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 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

 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제55조의3(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수 행을 위한 사업비 및 경비
- 2. 서민에 대한 자금대출
- 3.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자금대 출 및 운영경비·사업비 보조 등 지원
- 4.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신 설>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있다.

② (생략)

5.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사항</u>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u>진흥원</u>
<u>진흥원</u>
- <u>제45조</u> <u>제45조의2</u>
② (현행과 같음)